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이사장) 후보자 모집공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명 예정 직위 및 인원

직위	인원	임기	주요 직무내용
이사장	1명	임명일로 부터 3년	· 법령정관상 직무, 공단 사업운영 관련 대내외적 업무 등

2. 응모자격

- 연령, 학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구체적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구분	자 격 요 건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포괄적 자격요건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춘 사람

구분	자 격 요 건
구체적 자 격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급 이상으로 재직 및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이사장 직위 직무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법령에 의 한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 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 가능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는 사람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조직내부관리 관련 요건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경영수지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 기타 수행 능력요건

- 필요한 주요능력 : ①개혁성, ②리더십, ③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력, ④전문성, ⑤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⑥비전 제시 능력, ⑦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⑧청렴도, ⑨도덕성, ⑩준법성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및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 경력 : 시설관리 등 관련 기관 경력자, 공무원 경력자, 경영능력을 갖춘자
- 기타 능력 : 기업회계에 관한 기본 소양 등

○ 구체적 내용은 별지 참조(이사장 직무수행 요건)

4. 보수 및 임기

- 보수 : 여수시장과의 계약에 의함
- 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5. 원서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 “채용공고” 란 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5. 7. 7.(월) ~ 2025. 7. 22.(화) 18:00 까지
- 접 수 처 : 공단 본사 경영지원부(여문2로 40, 2층)
- 접수방법 : 방문, E-mail,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 : 본인 접수가 원칙이나 대리 접수도 가능
 - 이메일 접수 : 업무 담당자 이메일(afh1222@yumcorp.or.kr)
- ※ 메일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61-662-8066) 확인
- 우편 접수 :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 받는 사람 : 전남 여수시 여문2로 40, 2층(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임원(이사장) 채용 담당자(우편번호 : 59704)
- ▶ 등기 발송 후 채용 담당자(061-662-8066)에게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고지
- ▶ 우편봉투 겉면에 '임원(이사장) 선임 응시원서' 표기

○ 접수시간 :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① 지원서(지정양식)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1부

※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참조하여 임용지원직위 담당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을 포함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③ 자기소개서(지정양식) 1부

※ 지원동기, 경영철학, 경영경험, 주요경력, 업적분야, 사회봉사 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⑥ 관련 자격증 사본(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⑧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지정양식) 1부

6.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단계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근거로 공단이 정한 직무수행요건을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별 면접

○ 합격자 통보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 공단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심사결과 취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됩니다.

○ 경력, 자격 등 제출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시 본 공고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로 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에게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모계획 및 심사 일정은 공단 및 임원추천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본 공개모집은 전 과정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임명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8. 문의사항 : 접수처와 동일